



의안번호	제 2021 - 3호
의 결 연 월 일	2022. 1. 24. (제114차 정기회의)

의  
결  
안  
건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의 건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 1. 의결 주문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제8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인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함으로서 이에 대한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임

## 3. 주요 내용

별지와 같음

별지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1.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1
2.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38
3.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65
4.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86
5. 공갈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105
6. 손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125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의 양형기준은 체포·감금(형법 제276조 제1항), 존속체포·감금(형법 제276조 제2항), 중체포·감금(형법 제277조 제1항), 중존속체포·감금(형법 제277조 제2항), 특수체포·감금, 특수존속체포·감금, 특수중체포·감금, 특수중존속체포·감금(형법 제278조), 상습체포·감금, 상습존속체포·감금, 상습중체포·감금, 상습중존속체포·감금(형법 제279조), 체포·감금치상, 중체포·감금치상, 특수체포·감금치상, 특수중체포·감금치상, 상습체포·감금치상, 상습중체포·감금치상(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존속체포·감금치상, 중존속체포·감금치상, 특수존속체포·감금치상, 특수중존속체포·감금치상, 상습존속체포·감금치상, 상습중존속체포·감금치상(형법 제281조 제2항 전문), 체포·감금치사, 중체포·감금치사, 특수체포·감금치사, 특수중체포·감금치사, 상습체포·감금치사, 상습중체포·감금치사(형법 제281조 제1항 후문), 존속체포·감금치사, 중존속체포·감금치사, 특수존속체포·감금치사, 특수중존속체포·감금치사, 상습존속체포·감금치사, 상습중존속체포·감금치사(형법 제281조 제2항 후문), 공동체포·감금, 공동존속체포·감금(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누범체포·감금, 누범존속체포·감금(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누범특수체포·감금, 누범특수존속체포·감금(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보복목적 체포·감금(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보복목적 체포·감금치사(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3항), 유기(형법 제271조 제1항), 존속유기(형법 제271조 제2항), 중유기(형법 제271조 제3항), 중존속유기(형법 제271조

제4항), 영아유기(형법 제272조), 학대(형법 제273조 제1항), 존속학대(형법 제273조 제2항), 유기치상·중유기치상·영아유기치상·학대치상(형법 제275조 제1항 전문), 존속유기치상·중존속유기치상·존속학대치상(형법 제275조 제2항 전문), 유기치사·중유기치사·영아유기치사·학대치사(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존속유기치사·중존속유기치사·존속학대치사(형법 제275조 제2항 후문),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학대(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72조)~~, 노인복지법상 노인유기·학대(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학대(청소년 보호법 제57조),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72조)~~,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72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장애아동관람, 구결강요·이용행위(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72조), 아동학대살해(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항), 아동학대중상해(아동학대처벌법 제5조)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약어표 ◆

- 폭력행위처벌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특정범죄가중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아동학대처벌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체포·감금	- 8월	6월 - 1년	8월 - 2년
2	보복목적 체포·감금	4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 - 2년6월
3	누범체포·감금	6월 - 1년6월	10월 - 3년	1년6월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li> <li>○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li> <li>○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참작할 만한 범행동기</li> <li>○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li> <li>○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li> <li>○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존속인 피해자</li> <li>○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li> <li>○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li> <li>○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li> <li>○범행에 취약한 피해자</li> <li>○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아자 청각 및 언어장애인</li> <li>○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자수 또는 내부고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종 누범(3유형 제외)</li> <li>○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li> </ul>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처벌불원( <del>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del> )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체포·감금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기·학대범죄, 아동학대범죄**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체포·감금치상	6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li> <li>○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li> <li>○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참작할 만한 범행동기</li> <li>○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li> <li>○경미한 상해</li> <li>○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li> <li>○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li> <li>○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존속인 피해자</li> <li>○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li> <li>○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li> <li>○범행에 취약한 피해자</li> <li>○중한 상해</li> <li>○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 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농아자 청각 및 언어장애인</b></li> <li>○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자수 또는 내부고발</li> <li>○처벌불원(<del>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del>) 또는 <b>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종 누범</li> <li>○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li> <li>○상습범인 경우</li> </ul>
일반 양형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극 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li> <li>○계획적인 범행</li> </ul>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인자	행위 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li>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li> <li>○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li> </ul>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체포·감금치사	1년6월- 3년	2년 - 4년	3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li> <li>○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참작할 만한 범행동기</li> <li>○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li> <li>○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li> <li>○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존속인 피해자</li> <li>○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li> <li>○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li> <li>○범행에 취약한 피해자</li> <li>○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아자 청각 및 언어장애인</li> <li>○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자수 또는 내부고발</li> <li>○처벌불원(<del>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del>)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종 누범</li> </ul>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극 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li> <li>○계획적인 범행</li> </ul>
	행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li> </ul>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li> <li>○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li> </ul>

## 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유기·학대	- 8월	2월 - 1년	6월 - 1년6월
2	중한 유기·학대	2월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li> <li>○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li> <li>○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참작할 만한 범행동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존속인 피해자</li> <li>○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li> <li>○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농아자 청각 및 언어장애인</b></li> <li>○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자수 또는 내부고발</li> <li>○처벌불원(<b>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b>) 또는 <b>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종 누범</li> <li>○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li> <li>○상습범인 경우(<b>아동복지법 제72조</b>,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li> </ul>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극 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적인 범행</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li> <li>○진지한 반성</li> <li>○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b>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li> <li>○ <b>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b></li> </ul>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유기·학대치상	2월 - 1년6월	6월 - 2년	1년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li> <li>○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li> <li>○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참작할 만한 범행동기</li> <li>○경미한 상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존속인 피해자</li> <li>○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li> <li>○중한 상해</li> <li>○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농아자 청각 및 언어장애인</b></li> <li>○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자수 또는 내부고발</li> <li>○처벌불원(<del>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del>) 또는 <b>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종 누범</li> <li>○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li> <li>○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li> </ul>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극 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적인 범행</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li> <li>○진지한 반성</li> <li>○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b>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li> <li>○<b>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b></li> </ul>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유기·학대치사	1년6월- 3년	2년 - 4년	3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li> <li>○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참작할 만한 범행동기</li> <li>○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존속인 피해자</li> <li>○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li> <li>○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농아자 청각 및 언어장애인</b></li> <li>○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자수 또는 내부고발</li> <li>○처벌불원(<del>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del>) 또는 <b>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종 누범</li> </ul>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극 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적인 범행</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li> <li>○진지한 반성</li> <li>○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b>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li> <li>○ <b>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b></li> </ul>

### 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2월 - 1년	6월 - 1년6월	1년2월 - 3년6월
2	성적 학대	4월 - 1년6월	8월 - 2년6월	2년 - 5년
3	매매	6월 - 2년	1년 - 3년	2년6월 - 6년

구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li> <li>○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2유형)</li> <li>○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참작할 만한 범행동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존속인 피해자</li> <li>○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1, 2유형)</li> <li>○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농아자 청각 및 언어장애인</b></li> <li>○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자수 또는 내부고발</li> <li>○처벌불원(<del>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del>)</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종 누범(2유형의 경우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포함)</li> <li>○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li> <li>○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del>아동학대처벌법 제6조</del>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li> </ul>
일반 양형	행위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적인 범행</li> <li>○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li> </ul>

인자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li>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2유형의 경우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포함)</li> <li>○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li> </ul>
----	------------	--	---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아동학대중상해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8년
2	아동학대치사	2년6월 - 5년	4년 - <del>7년</del> 8년	<del>6년 - 10년</del> 7년 - 15년
3	아동학대살해	12년 - 18년	17년 - 22년	20년 이상, 무기 이상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li>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li> <li>○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1, 2유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학대 등의 정도가 중한 경우</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li>○ 사체손괴(2, 3유형)</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농아자 청각 및 언어장애인</b></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 또는 내부고발</li> <li>○ 처벌불원 (<del>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del>)</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li> <li>○ 동종 누범</li> </ul>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극 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적인 범행</li> <li>○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li> <li>○ 사체유기(2, 3유형)</li> </ul>
	행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지한 반성</li> <li>○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범행 후 구호 후송</li> <li>○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li> <li>○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li> </ul>
--	-----	--	---

## [유형의 정의]

### 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체포·감금	형법 제276조 제1항
	존속체포·감금	형법 제276조 제2항
	중체포·감금	형법 제277조 제1항
	중존속체포·감금	형법 제277조 제2항
	공동체포·감금, 공동존속체포·감금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특수체포·감금, 특수존속체포·감금, 특수중체포·감금, 특수중존속체포·감금	형법 제278조
	상습체포·감금, 상습존속체포·감금, 상습중체포·감금, 상습중존속체포·감금	형법 제279조
제2유형 보복목적 체포·감금	보복목적 체포·감금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제3유형 누범체포·감금	누범체포·감금, 누범존속체포·감금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누범특수체포·감금, 누범특수존속체포·감금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체포·감금치상, 중체포·감금치상, 특수체포·감금치상, 특수중체포·감금치상, 상습체포·감금치상, 상습중체포·감금치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존속체포·감금치상, 중존속체포·감금치상, 특수존속체포·감금치상, 특수중존속체포·감금치상, 상습존속체포·감금치상, 상습중존속체포·감금치상	형법 제281조 제2항 전문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체포·감금치사, 중체포·감금치사, 특수체포·감금치사, 특수중체포·감금치사, 상습체포·감금치사, 상습중체포·감금치사	형법 제281조 제1항 후문
존속체포·감금치사, 중존속체포·감금치사, 특수존속체포·감금치사, 특수중존속체포·감금치사, 상습존속체포·감금치사, 상습중존속체포·감금치사	형법 제281조 제2항 후문
보복목적 체포·감금치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3항

## 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일반유기·학대	유기	형법 제271조 제1항
	존속유기	형법 제271조 제2항
	영아유기	형법 제272조
	학대	형법 제273조 제1항
	존속학대	형법 제273조 제2항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중유기	형법 제271조 제3항
	중존속유기	형법 제271조 제4항
	<del>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학대</del>	<del>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72조</del>
	노인복지법상 노인유기·학대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학대	청소년보호법 제57조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유기치상·중유기치상· 영아유기치상·학대치상	형법 제275조 제1항 전문
존속유기치상·중존속유기치상· 존속학대치상	형법 제275조 제2항 전문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유기치사·중유기치사·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영아유기치사·학대치사	
존속유기치사·중존속유기치사· 존속학대치사	형법 제275조 제2항 후문

### 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신체적·정서 적 학대, 유기·방임 등	신체적 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72조
	정서적 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제72조
	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제72조
	장애아동관람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7호, 제72조
	구결강요·이용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8호, 제72조
제2유형 성적 학대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제72조
제3유형 매매	아동매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호, 제72조

####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아동학대중상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처벌법 제5조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항
제3유형 아동학대살해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

※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제1 내지 제3 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나목, 다목, 타목, 파목(나목, 다목의 각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나목, 다목, 타목, 파목(나목, 다목의 각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 [양형인자의 정의]

### 1. 체포·감금<sup>1)</sup>

#### 가.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체포·감금 시간이 극히 짧은 경우
  - 체포·감금 과정에서의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 체포·감금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결여
  -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감금하면서 감금장소 내에서의 신체적 활동이나 외부와의 연락을 허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로부터 자신이나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등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여 피해자를 격리하기 위하여 범행에 나아간

---

1) 유기·학대, 아동학대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경우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 라.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마.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마. 바.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의 발각 또는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 체포·감금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바. 사.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상당한 장시간 동안 피해자를 체포·감금한 경우
  - 체포·감금 과정에서의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 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자.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아. 카. 계획적인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 자. 파.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차. 하. 중한 상해**

-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 **카. 가.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 **2. 유기·학대<sup>2)</sup>,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가.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유기 : 보호의무위반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거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협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병원·파출소·보호시설 등에 유기한 경우, 타인 구조 확인 후 이탈한 경우
  - 학대 : 유형력 또는 폭언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거나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음란행위의 정도나 성적 수치심·혐오감의 야기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2) 아동학대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를 부양 또는 간호하던 중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피해자로부터 자신이나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등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여 피해자를 격리하기 위하여 범행에 나아간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 ~~○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라. 다.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무작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겨서 행위에 나아간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마. 라.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유기 : 발견이 곤란한 장소 또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거나 위험한 장소에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 학대 : 피해자를 고문~~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경우, 피해자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킨 경우, 피해자를 장시간 잠재우지 않거나 음식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상당히 중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경우, 음란행위의 정도나 성적 수치심·협오감의 야기 정도가 중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3. 아동학대

#### 가.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다만,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
  - 피해자를 부양 또는 보호하던 중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피해자로부터 먼저 가정폭력 등 범행을 장기간 당하여 범행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학대 등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유기 : 발견이 곤란한 장소 또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거나 위험한 장소에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 학대 : 피해자를 고문~~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경우, 피해자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킨 경우, 피해자를 장시간 잠재우지 않거나 음식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상당히 중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경우, 음란행위의 정도나 성적 수치심·혐오감의 야기 정도가 중한 경우
- 체포·감금 : 상당한 장시간 동안 피해자를 체포·감금한 경우, 체포·감금 과정에서의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경우
- 상해·폭행 :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 [공통원칙]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다수범죄 처리기준]

###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II. 집행유예 기준

### 1. 체포·감금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li> <li>○ 존속인 피해자</li>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li> <li>○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또는 사망 내지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li> <li>○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li> <li>○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li> <li>○ 동종 전과(5년 이내의, <b>금고형의</b>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li> <li>○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li> <li>○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li> <li>○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li> <li>○ 처벌불원(<del>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del>) 또는 <b>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b></li> <li>○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회 이상 <b>금고형의</b> 집행유예 이상 전과</li> <li>○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li> <li>○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li> <li>○ 진지한 반성 없음</li> <li>○ 계획적인 범행</li> <li>○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li> <li>○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li> <li>○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li>○ 피해 회복 노력 없음</li> <li>○ <b>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li> <li>○ 우발적인 범행</li> <li>○ 자수 또는 내부고발</li> <li>○ 진지한 반성</li> <li>○ <del>상당 금액 공탁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del></li> <li>○ <b>금고형의</b>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li> <li>○ <del>피고인이 고령</del></li> <li>○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li> <li>○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li> <li>○ 범행 후 구호 후송</li> <li>○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li> </ul>

## 2. 유기·학대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존속인 피해자</li>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또는 사망 내지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li> <li>○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li> <li>○ 동종 전과(5년 이내의, <b>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li> <li>○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li> <li>○ 처벌불원(<del>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del>) 또는 <b>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b></li> <li>○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회 이상 <b>금고형의</b> 집행유예 이상 전과</li> <li>○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li> <li>○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li> <li>○ 진지한 반성 없음</li> <li>○ 계획적인 범행</li> <li>○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li> <li>○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li> <li>○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li>○ 피해 회복 노력 없음</li> <li>○ <b>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li> <li>○ 자수 또는 내부고발</li> <li>○ 진지한 반성</li> <li>○ <del>상당 금액 공탁</del> <b>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b></li> <li>○ <b>금고형의</b>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li> <li>○ <del>피고인이 교령</del></li> <li>○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li> <li>○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li> <li>○ 범행 후 구호 후송</li> <li>○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li> </ul>

### 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증상해~~·~~치사~~ 아동학대(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는 제외)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del>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del>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li> <li>○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li> <li>○ 동종 전과(5년 이내의, <b>금고형</b>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b>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b></li> <li>○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li> <li>○ 처벌불원(<del>피해 회복을 위한</del> <b>진지한 노력 포함</b>)</li> <li>○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회 이상 <b>금고형</b>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li> <li>○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li> <li>○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li> <li>○ 진지한 반성 없음</li> <li>○ 계획적인 범행</li> <li>○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li> <li>○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li> <li>○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li>○ 피해 회복 노력 없음</li> <li>○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li> <li>○ <b>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li> <li>○ 자수 또는 내부고발</li> <li>○ 진지한 반성</li> <li>○ <del>상당 금액 공탁</del> <b>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b></li> <li>○ <b>금고형</b>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li> <li>○ <del>피고인이 고령</del></li> <li>○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li> <li>○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li> <li>○ 범행 후 구호 후송</li> <li>○ <del>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del></li> </ul>

##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 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폭력범죄의 양형기준은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 존속상해(형법 제257조 제2항), 중상해(형법 제258조 제1, 2항), 중존속상해(형법 제258조 제3항), 특수상해·특수존속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중상해·특수중존속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상해치사(형법 제259조 제1항), 존속상해치사(형법 제259조 제2항),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 존속폭행(형법 제260조 제2항), 특수폭행·특수존속폭행(형법 제261조), 폭행치상·특수폭행치상·존속폭행치상(형법 제262조), 폭행치사·특수폭행치사·존속폭행치사(형법 제262조), 상습상해·상습존속상해·상습중상해·상습중존속상해·상습특수상해·상습특수존속상해·상습특수중상해·상습특수중존속상해·상습폭행·상습존속폭행·상습특수폭행·상습특수존속폭행(형법 제264조), 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 존속협박(형법 제283조 제2항), 특수협박·특수존속협박(형법 제284조), 상습협박·상습존속협박·상습특수협박·상습특수존속협박(형법 제285조), 공동상해·공동존속상해·공동폭행·공동존속폭행·공동협박·공동존속협박(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누범상해·누범존속상해·누범폭행·누범존속폭행·누범협박·누범존속협박(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누범특수상해·누범특수존속상해·누범특수폭행·누범특수존속폭행·누범특수협박·누범특수존속협박(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보복목적 상해·보복목적 폭행·보복목적 협박(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보복목적 상해치사·보복목적 폭행치사(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3항), 운전자 폭행·운전자 협박(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 운전자 폭행치상·운전자 폭행치사·운전자 협박치상·운전자

협박치사(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약어표 ◆

- 폭력행위처벌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특정범죄가중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1. 일반적인 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월-10월	4월-1년6월	6월-2년6월
2	중상해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4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년-4년	3년-5년	4년-8년
4	보복목적 상해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li> <li>○경미한 상해(1, 4유형)</li> <li>○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li> <li>○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li> <li>○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li> <li>○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중한 상해(1, 4유형)</li> <li>○존속인 피해자</li> <li>○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li>○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li> <li>○공무집행방해의 경우</li> <li>○잔혹한 범행수법</li> <li>○범행에 취약한 피해자</li> </ul>
	행위자	○농아자 청각 및 언어장애인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del>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del> ) 또는 <del>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del>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 가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특수상해·누범상해, 폭행범죄, 협박범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2. 특수상해 · 누범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상해	4월-1년	6월-2년	1년-3년
2	특수중상해 · 누범상해	10월-2년	1년6월-3년6월	2년-5년
3	누범특수상해	1년6월-3년	2년-4년	3년-6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li> <li>○경미한 상해</li> <li>○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li> <li>○존속인 피해자</li> <li>○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li>○비난할만한 범행 동기</li> <li>○공무집행방해의 경우</li> <li>○잔혹한 범행수법</li> <li>○범행에 취약한 피해자</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아자 청각 및 언어장애인</li> <li>○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자수 또는 내부고발</li> <li>○처벌불원(<del>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del>) 또는 <del>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del>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li> <li>○상습범인 경우</li> </ul>
일반 양형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극 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적인 범행</li> </ul>

인자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li> <li>○진지한 반성</li> <li>○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li> <li>○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li> </ul>
----	------------	--	--

### 3. 폭행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8월	2월-10월	4월-1년6월
2	폭행치상	2월-1년6월	4월-2년	6월-3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년6월-3년	2년-4년	3년-5년
4	운전자 폭행치상	10월-2년	1년6월-3년	2년-4년
5	운전자 폭행치사	2년-4년	3년-5년	4년-8년
6	누범·특수폭행	2월-1년2월	4월-1년10월	6월-2년4월
7	보복목적 폭행	4월-1년4월	10월-2년	1년-2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li> <li>○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 6, 7유형)</li> <li>○경미한 상해(2, 4유형)</li> <li>○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li> <li>○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6유형 제외)</li> <li>○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li> <li>○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중한 상해(2, 4유형)</li> <li>○존속인 피해자</li> <li>○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li>○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li> <li>○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잔혹한 범행수법</li> <li>○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아자 청각 및 언어장애인</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 또는 내부고발</li> <li>○ 처벌불원(<del>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del>) 또는 <del>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del>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li> <li>○ 상습범인 경우</li> <li>○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li> </ul>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극 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li> <li>○ 계획적인 범행</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li>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li> <li>○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li> </ul>

#### 4. 협박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협박	-8월	2월-1년	4월-1년6월
2	운전자 협박치상	10월-2년	1년6월-3년	2년-4년
3	운전자 협박치사	2년-4년	3년-5년	4년-7년
4	누범·특수협박	2월-1년	4월-1년6월	6월-2년
5	보복목적 협박	4월-1년4월	10월-2년	1년-2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필적 고의로 협박행위를 저지른 경우</li> <li>○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 4, 5유형)</li> <li>○경미한 상해(2유형)</li> <li>○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li> <li>○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4유형 제외)</li> <li>○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li> <li>○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존속인 피해자</li> <li>○중한 상해(2유형)</li> <li>○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li>○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li> <li>○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li> <li>○잔혹한 범행수법</li> </u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행위자 /기타	○농아자 청각 및 언어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del>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del> ) 또는 <del>상 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del>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 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 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 박 유형은 제외)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 가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 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 함)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 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 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 는 경우는 제외)

## [유형의 정의]

### 1. 일반적인 상해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일반상해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존속상해	형법 제257조 제2항
	공동상해·공동존속상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상습상해·상습존속상해	형법 제264조
제2유형 중상해	중상해	형법 제258조 제1, 2항
	중존속상해	형법 제258조 제3항
	상습중상해·상습중존속상해	형법 제264조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해치사	형법 제259조 제1항
	존속상해치사	형법 제259조 제2항
	보복목적 상해치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3항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보복목적 상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 2. 특수상해 · 누범상해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특수상해	특수상해·특수존속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상습특수상해·상습특수존속상해	형법 제264조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 범상해	특수중상해·특수중중속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상습특수중상해·상습특수중중 속상해	형법 제264조
	누범상해·누범중속상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3호
제3유형 누범특수상해	누범특수상해·누범특수중속상 해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3호

### 3. 폭행범죄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일반폭행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중속폭행	형법 제260조 제2항
	공동폭행 · 공동중속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제2호
	상습폭행 · 상습중속폭행	형법 제264조
	운전자 폭행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
제2유형 폭행치상	폭행치상 · 특수폭행치상	형법 제262조
	폭행치상 · 특수폭행치상(중상 해)	형법 제262조
	중속폭행치상	형법 제262조
	중속폭행치상(중상해)	형법 제262조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폭행치사 · 특수폭행치사	형법 제262조
	중속폭행치사	형법 제262조
	보복목적 폭행치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3항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운전자 폭행치상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
제5유형 운전자 폭행치사	운전자 폭행치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
제6유형 누범·특수폭 행	상습특수폭행, 상습특수준속폭 행	형법 제264조
	누범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1호
	누범준속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2호
	특수폭행·특수준속폭행	형법 제261조
	누범특수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1호
	누범특수준속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2호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보복목적 폭행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 4. 협박범죄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일반협박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준속협박	형법 제283조 제2항
	공동협박·공동준속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제2호
	상습협박·상습준속협박	형법 제285조
	운전자 협박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
제2유형	운전자 협박치상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운전자 협박치상		제2항
제3유형 운전자 협박치사	운전자 협박치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
제6유형 누범·특수협 박	상습특수협박, 상습특수존속협박	형법 제285조
	누범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1호
	누범존속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2호
	특수협박·특수존속협박	형법 제284조
	누범특수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1호
	누범특수존속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2호
제7유형 보복목적 협박	보복목적 협박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제1 내지 제4 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적용법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 라목, 파목(가목, 라목의 각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 [양형인자의 정의]

### 가.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나. 중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 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등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되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범행 또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이에 대항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의 상당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범행 발생의 한 원인

이 된 경우,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또는 저지른 후에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그 피해가 상당히 확대된 경우 등을 의미한다.

#### 마.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 ~~바.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아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 바.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사.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 아.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아. 자. 잔혹한 범행수법

-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 자. 차.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차. 카.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타.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카. 하. 계획적인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거.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공통원칙]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다수범죄 처리기준]

###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II. 집행유예 기준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li> <li>○ 존속인 피해자</li> <li>○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li> <li>○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li> <li>○ 동종 전과(5년 이내의, <b>금고형의</b>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li> <li>○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li> <li>○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li> <li>○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b>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li> <li>○ 경미한 상해</li>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li> <li>○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li> <li>○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li> <li>○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처벌불원(<del>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del>) 또는 <b>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b></li> </ul>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회 이상 <b>금고형의</b> 집행유예 이상 전과</li> <li>○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li> <li>○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li> <li>○ 진지한 반성 없음</li> <li>○ 계획적인 범행</li> <li>○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li> <li>○ 우발적인 범행</li> <li>○ 자수 또는 내부고발</li> <li>○ 진지한 반성</li> <li>○ <del>상당 금액 공탁</del></li> <li>○ <b>금고형의</b>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li> </ul>

구 분	부정적	긍정적
	<p>해자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li> <li>○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li> <li>○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li>○ 피해 회복 노력 없음</li> <li>○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l>피고인이 고령</del></li> <li>○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li> <li>○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li> <li>○ 범행 후 구호 후송</li> <li>○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li> <li>○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li> </ul>

##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무집행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공무수행의 지장 또는 마비가 상당한 정도 또는 기간에 이르게 된 경우
  - 인명구조, 화재진압, 범죄수사, 치안유지 등을 위해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공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공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공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공정)사유와 일반공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공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공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명예훼손범죄의 양형기준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 307조 제2항), 사자의 명예훼손(형법 제308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상관명예훼손(군형법 제64조 제4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 제2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모욕(형법 제311조), 상관모욕(군형법 제64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 약어표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법

#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명예훼손	-6월	4월-1년	6월-1년6월
2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8월	6월-1년4월	8월-2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li> <li>○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li> <li>○ 미필적 고의</li> <li>○ 전과가능성이 낮은 경우(2 유형)</li> <li>○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li> <li>○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 균형법상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l>농아자</del> 청각 및 언어장애인</li> <li>○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li> <li>○ 자수</li> <li>○ 처벌불원(<del>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del>)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누범</li> <li>○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li> <li>○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li> </ul>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극 가담</li> <li>○ 전과가능성이 낮은 경우(1 유형)</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li>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li> </ul>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명예훼손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모욕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2. 모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모욕	-4월	2월-8월	4월-1년
2	상관모욕	-6월	4월-10월	6월-1년2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li> <li>○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li> <li>○ 공연성이 없는 경우(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li> <li>○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l>농아자</del> 청각 및 언어장애인</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처벌불원(<del>피해 회복을 위한</del> <b>진지한 노력 포함</b>)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누범</li> <li>○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1유형)</li> <li>○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1유형)</li> </ul>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가 준상관인 경우(2유형)</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li>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b>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li> <li>○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li> </ul>

## [유형의 정의]

###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가. 제1유형(일반 명예훼손)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	형법 제308조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	군형법 제64조 제4항

#### 나. 제2유형(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형법 제309조 제2항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2. 모욕

### 가. 제1유형(일반 모욕)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	형법 제311조

### 나. 제2유형(상관모욕)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	군형법 제64조 제1항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	군형법 제64조 제2항

※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제1, 2 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사목, 파목(사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사목, 파목(사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 [양형인자의 정의]

###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sup>3)</sup>

####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자로부터 범행이나 부당한 대우 등 피해를 입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등 피해자가 범행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장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공공의 이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적시된 사실 중 일부가 허위이기는 하나, 허위사실과 함께 적시된 사실 중 상당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 전체적인 맥락에서 허위사실이 부수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크게 중요성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

---

3) 모욕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미필적 고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전에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나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거나 범행 당시에는 사실이라고 오인할 만한 근거가 일부 있었던 경우 등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경우
  - 특정의 소수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마.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2유형)

- 인터넷 등을 사용한 경우라도 조회 수가 극히 미미한 경우. 다만, 다른 사용자에게 의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바.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별다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이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무차별(무작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나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실직, 가정파탄, 자살시도나 자살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아.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 합성된 사진이나 조작된 SNS(Social Network Service) 대화내용을 첨부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 ~~피고인이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발언의 취소, 게시물의 삭제 또는 정정, 공개 사과 등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이 널리 알려져 피해자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경우도 포함한다.~~

#### 자.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차.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자발적 의사로 발언을 취소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경우를 포함한다.

#### 참. 가. 소극가담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만 참여하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타.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하.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 2. 모욕

### 가.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자가 피고인을 자극하거나 흥분케 하여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경우 등 피해자가 범행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장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일회적 욕설이나 단문의 댓글에 그치는 경우
  - 범행 당시 소수의 사람이 범행현장에 있었던 경우
  - 인터넷 등을 사용한 경우라도, 조회 수가 극히 미미한 경우. 다만, 다른 사용자에게 의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별다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이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무차별(무작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실직, 가정파탄, 자살시도나 자살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마.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모욕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 ~~피고인이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발언의 취소, 게시물의 삭제 또는 정정, 공개 사과 등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경우도 포함한다.~~

사. 피해자가 준상관인 경우

- 군형법 제2조 제1호 후문의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가 피해자인 경우를 의미한다.

##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공통원칙]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다수범죄 처리기준]

###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3. 경합범의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II. 집행유예 기준

###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li> <li>○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 순정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균형법)</li> <li>○ 동종 전과(5년 이내의, <b>금고형의</b>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li> <li>○ <b>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li> <li>○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li> <li>○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li> <li>○ 전과가능성이 낮은 경우</li> <li>○ 처벌불원(<del>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del>)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자수</li> </ul>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li> <li>○ 계획적 범행</li> <li>○ 2회 이상 <b>금고형의</b> 집행유예 이상 전과</li> <li>○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li> <li>○ 진지한 반성 없음</li> <li>○ 피해 회복 노력 없음</li> <li>○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li>○ <b>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li> <li>○ 우발적 범행</li> <li>○ <b>금고형의</b>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li> <li>○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li> <li>○ 진지한 반성</li> <li>○ <del>상당 금액 공탁</del></li> <li>○ <del>피고인이 고령</del></li> <li>○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li> <li>○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li> <li>○ <b>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b></li> </ul>

## 2. 모욕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li> <li>○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 동종 전과(5년 이내의, <b>금고형의</b>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li> <li>○ <b>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li> <li>○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li> <li>○ 공연성이 없는 경우(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경우)</li> <li>○ 처벌불원(<del>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del>) 또는 <b>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b></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적 범행</li> <li>○ 2회 이상 <b>금고형의</b> 집행유예 이상 전과</li> <li>○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li> <li>○ 진지한 반성 없음</li> <li>○ 피해 회복 노력 없음</li> <li>○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li>○ <b>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발적 범행</li> <li>○ <b>금고형의</b>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li> <li>○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li> <li>○ 진지한 반성</li> <li>○ <del>상당 금액 공탁</del></li> <li>○ <del>피고인이 고령</del></li> <li>○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li> <li>○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li> <li>○ <b>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b></li> </ul>

##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순정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군형법)'에서 '순정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군형법 제2조 제1호 전문).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주거침입범죄의 양형기준은 주거침입(형법 제319조 제1항), 퇴거불응(형법 제319조 제2항), 특수주거침입·퇴거불응(형법 제320조), 주거·신체수색(형법 제321조), 공동주거침입·퇴거불응(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누범주거침입·퇴거불응(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1호), 누범특수주거침입·퇴거불응(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1호)의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 약어표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폭력행위처벌법

#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1.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주거침입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2	퇴거불응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3	주거·신체수색	- 6월	4월 - 1년	8월 - 2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li> <li>•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li> <li>•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li> <li>•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각 및 언어 장애인</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 또는 내부 고발</li> <li>• 처벌불원(<del>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del>)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누범</li> <li>•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3유형)</li> <li>•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3유형)</li> </ul>
일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극 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li> </ul>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반 양 형 인 자			경우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li>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b>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li> <li>• <b>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b></li> </ul>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주거침입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누범·특수주거침입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주거침입 등	- 10월	6월 - 1년2월	1년 - 2년6월
2	누범주거침입 등	4월 - 1년	8월 - 1년4월	1년2월 - 3년
3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6월 - 3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li> <li>•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li> <li>•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li> <li>• 퇴거불응에 해당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li> <li>•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각 및 언어 장애인</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 또는 내부 고발</li> <li>• 처벌불원(<del>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del>)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누범(1유형)</li> </ul>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극 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적인 범행</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li>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li> <li>•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li> </ul>

## [유형의 정의]

### 1. 일반적 기준

#### 가. 제1유형(주거침입)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주거 등 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주거 등 침입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 나. 제2유형(퇴거불응)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함(퇴거불응)	형법 제319조 제2항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퇴거불응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 다. 제3유형(주거·신체 수색)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	형법 제321조

## 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가. 제1유형(특수주거침입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 등 침입	형법 제320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퇴거불응	형법 제320조

### 나. 제2유형(누범주거침입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력행위처벌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주거 등 침입하여 누범으로 처벌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1호
폭력행위처벌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퇴거불응하여 누범으로 처벌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1호

### 다. 제3유형(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p>폭력행위처벌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 등 침입하여 누범으로 처벌</p>	<p>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1호</p>
<p>폭력행위처벌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퇴거불응하여 누범으로 처벌</p>	<p>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1호</p>

※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제1유형의 주거·신체 수색)

구성요건	적용법조
<p>상습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아목, 파목(아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p>	<p>아동학대처벌법 제6조</p>
<p>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아목, 파목(아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p>	<p>아동학대처벌법 제7조</p>

## [양형인자의 정의]

###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신체의 일부만 침입하여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 실내 주거공간(이와 유사한 실내공간 포함) 외의 장소에서의 범행
  - 곧바로 임의 퇴거하여 주거 등에 체류한 시간이 매우 짧은 경우
  - 침입 당시 주거 등에 사람이 현존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라.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마.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 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

- 주거 등 평온의 침해가 상당한 장시간 동안 지속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주거침입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경우(다만, 범행 과정에서의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 행위로 인한 범죄와 주거침입 등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바.사.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죄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다만, 목적인 범죄와 주거침입 등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제외)
  - 성적 목적을 위한 경우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아.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자.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아.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차.~~ 카. 계획적인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공통원칙]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사유로 고려한다.

## [다수범죄 처리기준]

###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와 절도죄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절도범죄 양형기준의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의 권고 형량범위를 따르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3. 경합범의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II.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li> <li>○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li> <li>○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신체 수색에 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li> <li>○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li> <li>○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li> </ul>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li> <li>○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li> <li>○ 진지한 반성 없음</li> <li>○ 약물중독, 알콜중독</li> <li>○ 계획적인 범행</li> <li>○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li> <li>○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li>○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li> <li>○ 우발적인 범행</li> <li>○ 자수 또는 내부 고발</li> <li>○ 진지한 반성</li> <li>○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li> <li>○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li> <li>○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li> <li>○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li> <li>○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li> </ul>

##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 공갈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공갈범죄의 양형기준은 공갈(형법 제350조), 특수공갈(형법 제350조의2), 상습공갈(형법 제351조, 제350조), 상습특수공갈(형법 제351조, 제350조의2), 공동공갈(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누범공갈(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누범특수공갈(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특정경제범죄법상 공갈(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 약어표 ◆

- 폭력행위처벌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특정경제범죄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1. 일반공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6월
2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월 - 1년 2월	10월 - 2년	1년 6월 - 3년
3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3년	1년 6월 - 4년	3년 - 7년
4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 6월 - 4년 6월	3년 - 7년	5년 - 9년
5	50억 원 이상	3년 - 7년	5년 - 9년	7년 - 11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li>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li> <li>○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li> <li>○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농아자 청각 및 언어장애인</b></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li> <li>○ 처벌불원 <b>또는 상당 부분</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누범</li> <li>○ <b>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 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b></li> </ul>

		<b>피해 회복된 경우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b>	<b>해당하는 경우</b>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li> <li>○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li> <li>○ 소극 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li> <li>○ 계획적 범행</li>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li>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del>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del></li> <li>○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li>○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li> <li>○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li> </ul>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공갈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범죄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

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공갈·특수공갈	6월 - 2년	10월 - 3년	2년 - 5년
2	누범공갈·상습특수공갈	10월 - 2년 6월	1년 4월 - 4년	3년 - 6년
3	누범특수공갈	1년 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 각 유형에서 정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하되, 동일한 이득액에 따른 일반공갈 유형에서 각 대유형에 공통된 양형인자만을 반영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li>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특수공갈에 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li> <li>○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li> <li>○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농아자 청각 및 언어장애인</b></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li> <li>○ 처벌불원 <del>또는 상당 부분</del> <b>피해 회복된 경우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b></li> </ul>
일반 양형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적 범행</li>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ul>

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 못한 경우</li> <li>○ 소극 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li>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del>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del></li> <li>○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li>○ 이중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li> <li>○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li> </ul>

## [유형의 정의]

### 1. 일반공갈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공갈	형법 제350조
공동공갈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특정경제범죄법상 공갈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 가. **제1유형** : 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 나. **제2유형** : 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다. **제3유형** : 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라. **제4유형** : 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마. **제5유형** : 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	상습공갈	형법 제351조, 제350조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공갈	특수공갈	형법 제350조의2
제2유형 누범공갈·상습 특수공갈	누범공갈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3호
	상습특수공갈	형법 제351조, 제350조의2
제3유형 누범특수공갈	누범특수공갈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3호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제1, 2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적용법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차목, 파목(차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 [양형인자의 정의]

### 가.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가 경미한 경우(다만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은 경우는 제외)
  - 폭행·협박으로 인한 피해자의 외포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기존 채권의 추심 등을 위해 폭행·협박한 경우(다만 전문적으로 폭행·협박에 의해 추심하는 업체를 이용한 경우, 가족의 신변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에서 심각한 행패를 부린 경우는 제외)

- 권리 실행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조직폭력배로 행세하거나 범죄전력을 고지하는 등으로 행위자의 불량한 성행 또는 경력을 이용하거나 그러한 성행이나 경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범행한 경우
  - 가족의 신변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
  -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에서 심각한 행패를 부린 경우
  - 공무원의 지위 또는 언론사 기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단체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칭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마.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예견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가 자금경색으로 파산하게 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 피해자 회사의 신뢰추락으로 주가가 폭락하게 한 경우
  - 연쇄부도를 야기한 경우
  -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사.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한 경우를 의미한다.~~

#### 사.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아.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아. 자.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차.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자. 타. 계획적인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차. 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공갈범행인 경우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도박 등 불법적인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
  - 다른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에서 그 재산을 갈취한 경우
  - 조직폭력 집단간 세력 다툼에서 우세를 차지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갈취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카. 하.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거.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공통원칙]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다수범죄 처리기준]

###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3.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일반공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 ①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4.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일반공갈 범죄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일반공갈 범죄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II. 집행유예 기준

구 분	부정적	긍정적
<b>주요 참작 사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 동종 전과(5년 이내의, <b>금고형의</b>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li> <li>○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li> <li>○ 미합의</li> <li>○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li> <li>○ <b>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li>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li> <li>○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li> <li>○ <del>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del></li> <li>○ 처벌불원 또는 <b>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b></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b>일반 참작 사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b>금고형의</b> 집행유예 이상 전과</li>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li> <li>○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li> <li>○ 진지한 반성 없음</li> <li>○ 계획적인 범행</li> <li>○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li> <li>○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li> <li>○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li> <li>○ 피해 회복 노력 없음</li> <li>○ <b>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li> <li>○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li> <li>○ 진지한 반성</li> <li>○ <del>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del></li> <li>○ <b>금고형의</b>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li> <li>○ 참작 동기</li> <li>○ <del>피고인이 고령</del></li> <li>○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li> <li>○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li> <li>○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li> <li>○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li> <li>○ <b>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b></li> </ul>

##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 손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손괴범죄의 양형기준은 재물손괴 등(형법 제366조), 공익건조물파괴(형법 제367조), 중손괴(형법 제368조 제1항), 재물손괴 등 치상·공익건조물파괴치상(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재물손괴 등 치사·공익건조물파괴치사(형법 제368조 제2항 후문), 특수재물손괴 등(형법 제369조 제1항), 특수공익건조물파괴(형법 제369조 제2항), 공동재물손괴 등(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누범재물손괴 등(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누범특수재물손괴 등(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문화재손상 등(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 제2항, 제4항, 문화재절도는 제외, 이하 같음), 문화재특수손상 등(문화재보호법 제93조 제1항), 문화재특수손상 등 치상(문화재보호법 제93조 제2항 전문), 문화재특수손상 등 치사(문화재보호법 제93조 제2항 후문) 문화재건조물파괴(문화재보호법 제94조, 문화재건조물방화·일수는 제외, 이하 같음)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 약어표 ◆

□ 폭력행위처벌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Ⅲ.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1.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손괴 등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공익건조물파괴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4년
3	지정문화재손상 등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4	국가지정문화재손상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li> <li>○ 미필적 고의로 손괴행위를 저지른 경우</li> <li>○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li> <li>○ 처음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3, 4유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li> <li>○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1, 2유형)</li> <li>○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협을 발생하게 한 경우(1, 2유형)</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농아자 청각 및 언어장애인</b></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li> <li>○ 처벌불원(<del>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del>) 또는 <b>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누범</li> <li>○ <b>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1유형)</b></li> <li>○ <b>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1유형)</b></li> </ul>
일반 양형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극 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li> </ul>

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인 건조물 등 파괴(2유형)</li> <li>○ 계획적인 범행</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li>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li> <li>○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li> </ul>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손괴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누범·특수손괴,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2. 누범·특수손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누범·특수손괴 등	- 8월	6월 - 1년2월	8월 - 2년
2	누범특수손괴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1년6월 - 4년
3	문화재특수손상	1년 - 3년	2년 - 4년	3년 - 7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li> <li>○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li> <li>○ 처음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를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3유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li> <li>○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1, 2유형)</li> <li>○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농아자 청각 및 언어장애인</b></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li> <li>○ 처벌불원(<b>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b>) 또는 <b>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b></li> </ul>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극 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지정문화재를 손괴한 경우(3유형)</li> <li>○ 계획적인 범행</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li>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b>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li> <li>○ <b>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b></li> </ul>

### 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손괴·공익건조 물파괴치상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1년6월 - 4년6월
2	재물손괴·공익건조 물파괴치사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3	문화재특수손상치상	2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4	문화재특수손상치사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li> <li>○ 경미한 상해(1, 3유형)</li> <li>○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1, 3유형)</li> <li>○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2, 4유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1, 2유형)</li> <li>○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li> <li>○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중한 상해(1, 3유형)</li>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농아자 청각 및 언어장애인</b></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li> <li>○ 처벌불원(<b>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b>) 또는 <b>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누범</li> </ul>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극 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적인 범행</li> <li>○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1, 2유형)</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li>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li> </ul>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	--------------------	---

## [유형의 정의]

### 1. 일반적 기준

#### 가. 제1유형(재물손괴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재물손괴 등(재물·문서·특수매체기록을 손괴·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등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형법 제368조 제1항
공동으로 재물손괴 등 죄를 범한 경우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 나. 제2유형(공익건조물파괴)

구성요건	적용법조
공익건조물파괴	형법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형법 제368조 제1항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파괴(방화, 일수 제외)	문화재보호법 제94조

#### 다. 제3유형(지정문화재손상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지정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제외)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 제외), 일반동산문화재 손상 등(절취 제외)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
타인이 손상, 절취,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지정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제외)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 제외), 일반동산문화재 은닉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4항

#### 라. 제4유형(국가지정문화재손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국가지정문화재 손상 등(절취 제외)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
타인이 손상, 절취,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국가지정문화재 은닉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4항

## 2. 누범·특수손괴

### 가.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수재물손괴 등	형법 제369조 제1항
누범재물손괴 등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 나. 제2유형(누범특수손괴)

구성요건	적용법조
누범특수재물손괴 등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특수공익건조물파괴	형법 제369조 제2항

### 다. 제3유형(문화재특수손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일반동산문화재 특수손상 등(절취 제외)	문화재보호법 제93조 제1항

## 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제1유형(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재물손괴 등죄·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나. 제2유형(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재물손괴 등죄·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368조 제2항 후문

다. 제3유형(문화재특수손상치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문화재특수손상 등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를 관리·보호하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93조 제2항 전문

라. 제4유형(문화재특수손상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문화재특수손상 등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를 관리·보호하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93조 제2항 후문

※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제1유형의 재물손괴 등에 한함)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카목, 파목(카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카목, 파목(카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 [양형인자의 정의]

###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원상회복 또는 수리에 비용이 들지 않거나 적은 비용으로 원상회복 등이 가능할 정도로 실제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경우
  - 피해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아주 작은 경우
  - 물질적 훼손이 수반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의 감정상의 문제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처음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를 의도하지는 않았

## 던 경우

- 처음부터 대상 물건이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 2항 소정의 국가 지정문화재나 그 외 지정문화재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손괴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고, 위 국가지정문화재 등이 일반적으로 소재하는 장소와 무관한 곳에서 범행 과정 중 우연히 대상 물건이 국가지정문화재 등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 ~~마.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 마.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

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바. 사.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고가의 골동품, 귀금속, 고액의 유가증권 등을 손괴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피해(피해자의 피해품에 대한 주관적 가치, 파생적 손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입힌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 2항 소정의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외 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손괴범죄로 인하여 상당히 중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아.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별다른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범행하는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종교적 이유로 타 종교시설 등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아. 자. 소극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차.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차. 타.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인 건조물 등 파괴**

- 문화재보호법 제94조 소정의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을 파괴

한 경우를 의미한다.

#### **차. 파. 계획적인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카. 하.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타. 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 **파. 너. 중한 상해**

-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 **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공통원칙]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다수범죄 처리기준]

###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II.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li>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손괴로 인한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li> <li>○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li> <li>○ 동종 전과(5년 이내의, <b>금고형의</b>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li> <li>○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b>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재물손괴 등에 한함)</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li> <li>○ 손괴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단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은 제외)</li> <li>○ 경미한 상해</li> <li>○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li> <li>○ <b>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b></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회 이상 <b>금고형의</b> 집행유예 이상 전과</li> <li>○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li> <li>○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li> <li>○ 진지한 반성 없음</li> <li>○ 계획적인 범행</li> <li>○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li> <li>○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li>○ 피해 회복 노력 없음</li> <li>○ <b>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li> <li>○ 우발적인 범행</li> <li>○ 자수</li> <li>○ 진지한 반성</li> <li>○ <b>상당 금액 공탁</b></li> <li>○ <b>금고형의</b>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li> <li>○ <b>피고인이 교량</b></li> <li>○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li> <li>○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li> <li>○ 범행 후 구호후송</li> <li>○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li> </ul>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